

OECD 21개국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비교연구 :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윤홍식

(전북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부·모 노동력의 탈상품화·가족화와 상품화·탈가족화 정도를 반영하는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수준을 통해 OECD 21개국을 비교분석하여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남성생계 부양자에 근거한 주류 복지국가 논의에 대한 대안적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사민주의 4개국은 구사회위험 뿐만 아니라 신사회위험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부모권의 지원 문제, 즉 가족정책의 가족화 수준이 반드시 탈가족화 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예에서 보듯 두 국가 부모휴가제도의 탈상품화 수준은 낮지만 가족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한국가족정책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함의를 정리하였다. 첫째,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책목표의 달성은 단순히 제도도입 여부와 같은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부모휴가(육아휴직)제도 등이 실제적으로 부·모의 실제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가족정책에서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탈)가족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힘은 한국사회의 여성유급노동에 대한 객관적 필요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여성의 유급고용 확대를 위한 시장과 비시장부분에서의 충분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신사회위험에 대한 가족정책의 대응을 위해 계급과 계층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사회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주제어: (탈)상품화, (탈)가족화, 부모권, 노동권, 가족정책, 부모휴가, 아동양육, 가족정책

* 본 논문은 2005년도 전북대학교 2005년도 자체(교내)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으며, 2006년도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비평을 거쳐 수정·보완된 것입니다.

1. 문제제기

1970년대의 두 차례 석유과동으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복지국가 위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로부터 촉발된 복지국가의 위기는 남성생계부양자에 기반 한 복지체제의 구조적 재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논자들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종언을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산업화된 유럽국가들에서 전통적인 복지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일례로, 전후 복지전형인 사민주의 복지체제(덴마크, 핀란드, 스웨덴)를 뒷받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예산 지출은 1997-1998년과 2000-2001년을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감소했다(Taylor-Gooby, 2004a: 213).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집행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산 규모는 동기간 동안 1.96%에서 1.09%로 무려 45.1%나 감소했다. 반면 아동양육과 관련된 정책프로그램의 급여수준과 자격 등은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지난 십여 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Duvander, Ferrarini, and Thalberg, 2005).

유럽 복지국가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은 지난 사반세기 동안 가장 큰 전환이라고 지칭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Crompton, 1999, Smith 2001 재인용).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이 공적영역인 노동시장에서 사적영역이라고 간주되는 가족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가족원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면제받았다고 간주되는 남성노동자에게 사회적 위험은 실업,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임금노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되지만, 가족 내 돌봄의 주 담당자였던 여성노동자에게 사회적 위험은 돌봄의 책임으로 인해 임금노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위험을 포괄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 특히 돌보아야 할 자녀가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임금노동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위험은 공적영역(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실업, 질병, 노령 등과 함께 사적영역(가족영역)에서 발생하는 임신, 출산, 양육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2002년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여성의 50.3%가 육아와 가사 부담이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4). 특히 어린자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0대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은 무려 60.7%에 이르고 있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필연적으로 사적영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족 내 재생산노동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Smith, 2001), 이러한 요구에 있어서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렇듯 서구복지국가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돌봄 과제는 복지국가재편의 핵심적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모휴가(Parental leave)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child care)을 중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21개국의 가족정책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가족정책 중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OECD 21개국을 비교 분석하는 이유는 복지체제 재편의 핵심적 과제가 사적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대응을 제도화하는 것이고, 이러한 제도화는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로 대표되는 일-가족양립정책으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이다(Gregory and Windebank, 2000; Aust and Bönker, 2004; Taylor-Gooby and Larsen, 2004). 더불어

임신, 출산, 양육 등 소위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s)에 대한 대응은 개별 부·모¹⁾의 일-가족양립 문제를 넘어 복지국가의 주요한 현안인 출산력, 고령화, 불평등, 빈곤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Aust and Bönker, 2004; Ferrarini, 2003; Sleebos, 2003). 즉, 신사회위험²⁾에 대한 OECD 국가들의 정책대응을 가족정책 중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들로 대표되는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해 비교해 봄으로써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불평등 등의 국가적 과제에 대한 정책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가족양립을 둘러싼 쟁점(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와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의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다. 일-가족양립 정책이란 노동하는 주체인 부·모의 노동력을 탈상품화·가족화시키는 부모권 보장과 상품화·탈가족화시키는 노동권 보장의 양립문제이기 때문이다(윤홍식, 2005).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와 유형화의 방법으로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분석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고, 이어서 일-가족양립 지원 수준을 준거로 OECD 21개국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정리 및 정책함의를 위한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가 한국사회에 전달하는 함의에 대해 정리했다.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이 모든 일-가족양립정책을 포괄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정책과 관련된 정책에 근거한 비교분석은 신사회위험에 대한 OECD 국가들의 대응을 비교·검토하는 유용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가족양립정책을 둘러싼 쟁점: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일-가족양립정책이 복지국가 재편에서 핵심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이유는 복지국가 위기의 출발이 현상적으로는 경제위기로 인한 복지국가의 재정압박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남성 생계부양자에 기반 한 전통적 복지체제가 ‘가족’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 1) 본 논문에서 부·모란 부모, 부, 모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했다. 자칫 부모로 표현했을 때 양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가구를 의미할 수 있다는 오해를 풀고,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를 포괄하기 위해 ‘부·모’란 표기를 사용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부모권은 부모의 공동의 권리이기보다는 부모 각각의 개별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의 핵심적 주제인 일-가족양립정책의 최대수혜자는 한부모가가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부모가가구야말로 한 부모가 일과 가족생활을 전적으로 담당해야 하기에 일과 가족생활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가구형태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일-가족양립의 실현은 한부모가가구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 2) 일반적으로 유럽사회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 등과 같이 사적영역에서 발생하는 돌봄의 문제를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s)으로 인식하고 있다 (Taylor-Gooby, 2004b), 그러나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노르딕국가들에서는 돌봄과 관련된 사회위험에 대응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정책을 통해 이루어져 왔고, 상대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노르딕국가들에서 신사회위험은 저학력과 고령의 실업자, 이민자 집단 등이 고용과 서비스전달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상을 신신사회위험(new new social risk)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돌봄의 문제는 구신사회위험(old new social risk)으로 간주되고 있다 (Timonen, 2004). 본 연구에서는 신사회위험을 비노르딕 유럽 국가들과 같이 사적영역에서 발생하는 돌봄과 관련된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정책의 영역에서 보면 복지국가의 위기는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자에 기반 한 복지국가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대표되는 후기산업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Aust and Bönker, 2004).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가구는 남성생계부양자가구에서 2인 생계부양자가구로 전환되고 있는데 반해 현재의 복지체제는 사적(가족)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전환(이인생계부양자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테일러-구비(Taylor-Goody, 2004b)의 지적과 같이 일-가족양립정책은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사회위험에 대한 복지체제의 주요한 대응방식이다. 더 나아가 일-가족양립과제가 적절히 지원되지 않았을 때 저출산, 불평등, 빈곤 등의 사회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1인 생계부양자가구의 빈곤율은 2인 생계부양자가구의 빈곤율에 비해 2.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sping-Andersen, 2002, Taylor-Gooby, 2004b).

결국 일-가족양립정책이란 노동하는 주체인 부·모 각각의 노동권(임금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과 부모권(아동을 돌볼 수 있는 권리)을 보장·양립하는 것을 의미한다³⁾.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노동권과 부모권의 보장과 양립의 과제가 전통적 복지국가의 핵심적 기능인 노동시장에서의 탈상품화만을 통해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노동권과 부모권의 양립인 일-가족양립은 탈상품화를 넘어, 상품화, 가족화, 탈가족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현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권과 부모권의 보장과 관련된 가족정책(일-가족양립정책)은 (탈)상품화와 (탈)가족화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윤홍식, 2005: 310-1). 또한 에스핑-앤더슨⁴⁾(Esping-Andersen, 1990: 46)의 지적처럼 진정한 탈상품화는 임금노동자가 (재)교육을 받거나, 여가를 즐기거나, 자녀를 돌보거나, 가족에 대한 의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금노동을 중단해도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 것(탈상품화)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근거로 OECD 21개국 비교분석의 주요한 근거인 일-가족양립정책의 핵심적 개념(노동권과 부모권)의 전제가 되는 (탈)상품화와 (탈)가족화의 쟁점을 가족정책의 영역, 구체적으로 일-가족양립정책 중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과 관련된 정책 영역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 장 마지막에는 부모권과 노동권의 양립정책(일-가족양립정책)을 젠더역할 통합의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3) 이러한 주장에 근거했을 때 본 논문에서 상정하고 있는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의 대상은 주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부·모로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은 일반적으로 부모권과 노동권이 일치하지 않는 부·모의 권리를 포괄한다고 했을 때 부모권과 노동권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스웨덴, 덴마크 등 완전고용에 근거해 모두가 일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상정했을 때(Timonen, 2004) 현재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노동권과 부모권 보장과 양립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가족 내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다면 잠재적으로 노동권과 부모권 보장과 양립의 대상에 포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에스핑-앤더슨(1990)은 진정한 탈상품화를 언급하면서 ‘가족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에스핑-앤더슨의 진정한 탈상품화의 개념에 가족화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은 저자가 탈상품화로 인해 임금노동을 수행하는 대신 할 수 있는 교육, 가족책임, 자녀양육 등 다양한 일들 중 가족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개념임을 밝혀둔다.

1) 부모권: 탈상품화와 가족화

탈상품화 개념의 상당 부분은 에스핑-앤더슨의 정의에 의존하고 있다. 에스핑-앤더슨(1990: 37)은 탈상품화를 “개인 또는 가족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에스핑-앤더슨(1990: 46)은 탈상품화 정책들을 언급하면서 임금노동자가 여가를 즐기거나, (재)교육을 받거나, 자녀를 돌보거나, 가족책임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금노동을 중단해도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진정한 탈상품화(truly de-commodification)라고 지적하고 있다. 왜 탈상품화가 필요한가라는 원론적 문제제기에 대해 에스핑-앤더슨은 가족 내 아동 돌봄, 가족책임, (재)교육, 여가 등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탈상품화는 단순히 임금노동을 중단해도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동적이고 정태적 개념으로써 정의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탈상품화는 임금노동자가 자녀양육, 가족책임, 여가 등의 활동(노동)을 하기위해 임금노동을 중단할 수 있는 적극적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탈상품화의 개념을 가족정책의 영역에 적용하면 탈상품화 정책은 부·모 노동력의 탈상품화를 통해 부·모가 가족 내에서 (아동양육을 포함해) 가족과 관련된 책임을 수행 할 수 있게 하는 정책들로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부·모 노동력의 탈상품화는 부·모가 가족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 노동력의 가족화를 동반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에스핑-앤더슨의 탈상품화를 단순히 임금노동을 수행하지 않고도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수동적 개념으로 이해한 것은 탈상품화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에스핑-앤더슨의 탈상품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탈상품화 개념을 구체적 정책에 적용시킬 때는 노동력의 탈상품화와 수반되는 다른 개념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부·모 노동력의 탈상품화는 부·모 노동력의 가족화와 동반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상품화와 이에 수반하는 가족화의 개념을 구체적인 가족정책과 관련지어 보면 부모휴가는 노동 시장에서 상품화되어있는 부·모의 노동력을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시켜 가족 내에서 자녀(들)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의 노동력을 가족화(familialization)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족정책에서 부모권 보장은 이처럼 탈상품화와 가족화라는 두 가지 개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탈상품화와 가족화 개념을 부·모 각각의 독립적 부모권 보장과 연관 지을 때 우리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한다. 탈상품화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에스핑-앤더슨에 따르면 탈상품화의 주체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위로써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상품화의 주체는 분명히 구별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에스핑-앤더슨의 탈상품화 개념에서 개인은 임금노동자를 지칭하고 가족은 임금노동자의 피부양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은 남성생계부양자이며, 가족은 남성과 남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로서 여성과 아동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탈상품화의 주체로서 개인과 가족을 구별하지 않는 것은 탈상품화의 주체로서 남성생계

부양자의 이해와 피부양자인 여성을 포함한 가족의 이해가 일치된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단위로서 가족의 이해와 개인, 특히 여성의 이해는 많은 경우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억압과 불평등은 상당부분 개인으로서 여성의 이해를 남성가부장의 이해를 대변하는 가족의 이해에 종속시켰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에스핑-앤더슨은 남성생계부양자(개인)의 이해와 단위로서 가족의 이해가 등치한다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담론을 답습하고 있다.⁵⁾ 그러므로 젠더관점에서 탈상품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탈상품화의 주체로 남성과 여성을 독립적으로 상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부·모의 부모권을 지원하는 부모휴가를 통해 탈상품화와 가족화를 이해할 때 탈상품화와 가족화의 주체는 명백히 개별권리를 가진 여성과 남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휴가가 부·모 중 누가 이용해도 관계없는 가족권리로 이해될 때 대부분의 이용자는 여성이 되며, 결국 공적·사적영역의 젠더불평등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Smith, 2001; Leria, 2002).

2) 노동권: 탈가족화와 상품화⁶⁾

아동양육의 사회화는 부·모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대표적 정책이다. 양육의 사회화는 가족(여성)에게 부과되었던 양육의무의 일부⁷⁾를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시킴으로써 부·모의 노동력을 상품화(commodification)시킬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한다. 물론 바렛(2005: 345)의 지적과 같이 남성 노동력의 상품화가 양육책임 때문에 제약된 예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남성노동력의 상품화가 아동양육의 탈가족화를 전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남성노동력의 상품화가 상수로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은 여성이 가족 내에서 재생산 노동을 전적으로 담당한다는 전제가 충족될 때 가능한 것이다. 반면 일-가족 양립의 주체를 개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2인 생계부양자가구로서 부·모 각각의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 근거한다면 남성노동력의 상품화 또한 아동양육의 일정부분을 사회화시킬 때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 노동에 대한 남성 참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경험적으로 논증되고 있다(Hass, 1992; Leria, 2002).

아동보육제도는 이처럼 부·모의 노동력을 탈가족화·상품화시켜 부·모의 노동권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탈가족화는 탈상품화와 달리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주류논의에서 에스핑-앤더슨의 개념을 주로 사용하지만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 개념은 몇 가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에스핑-앤더슨은 탈가족화를 서로 미묘한 차이를 내재한 두 가지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다.

- 5) 마르크스가 “노동력의 가치는 성인 (남성)노동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 뿐 아니라, 그의 가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은 개인을 가족이라는 단위에 통합시키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하고 있다 (Barrett, 2005: 200).
- 6) 상품화의 개념은 앞서 언급한 탈상품화에 전제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노동력을 시장에서 임금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Esping-Andersen, 1990; Leria, 2002).
- 7) 여기서 아동양육 의무의 일부를 탈가족화 시킨다고 적시한 것은 공적보육시설에서 아동을 돌본다고 해도, 보육시설이용시간이후 등과 같은 아동양육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탈가족화란 가구의 복지와 돌봄의 책임·부담이 시장 또는 국가의 복지제공을 통해 완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Esping-Andersen, 1999: 51). 이어서 같은 저작, 같은 쪽에서 다시 탈가족화를 탈상품화와 평행(parallels)되는 개념으로 언급하면서 탈가족화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사전적 조건으로 정의하고 있는 올로프(Orloff)의 개념을 인용한다. 따라서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는 사회정책(또는 시장)을 통해 여성의 돌봄 책임이 완화되어 여성이 (가족관계 또는 형태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상품화되거나 또는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 개념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탈가족화를 탈상품화와 병행되는 개념이라고 적시한 부분이다. 에스핑-앤더슨의 탈상품화 개념을 빌려 탈가족화의 개념을 탈상품화와 평행하게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탈상품화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시키지 않는 것이라면, 탈가족화는 자신의 노동력을 가족화(가족을 돌보지)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에스핑-앤더슨의 (진정한) 탈상품화 정책의 개념을 탈가족화 정책에 적용한다면, 진정한 탈가족화(truly defamilialization)란 가족 내에서 부·모가 임금노동, 여가, (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돌봄을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데일리(Daly, 2000)도 아동을 돌보는 일이 부·모에서 사회로 이전되는 것을 탈가족화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레리아(Leria, 2002)는 직접적으로 탈가족화를 가족 밖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⁸⁾

탈가족화·상품화와 관련된 다른 쟁점은 탈가족화가 (특히 모의) 노동력 상품화의 전제라는 것이다. 올로프(Orloff, 1993)에 따르면 탈가족화는 여성노동력 상품화의 전제라고 주장하고, 에스핑-앤더슨(1999: 51)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적아동보육시설의 확대는 여성의 상품화, 즉 여성이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탈가족화가 상품화의 전제가 된다는 주장은 논쟁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서구사회에서 여성 노동력의 상품화는 시간적으로 공적보육시설의 확대라는 탈가족화에 선행했기 때문이다. 스웨덴, 덴마크 등 사민주의 국가는 물론이고 영국과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아동양육의 탈가족화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선행된 이후에 확대되었다(Nyberg, 2004; Lewis, 1993). 즉,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가 반드시 아동보육시설의 확대(탈가족화)를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예를 보면 보육시설의 확대 없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꾸준히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aylor-Gooby and Larsen, 2004). 그러므로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탈가족화와 상품화를 선후의 문제로 이해하기 보다는 동시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⁹⁾

정리하면, 탈가족화란 가족원(주로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의 완화를 통해 부·모가 임금노동, 여

8) 논의를 보다 진전시키면 탈가족화란 부·모가 돌봄노동을 중단해도 가족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여기서는 아동)이 적절한 수준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9) 부·모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써의 공적보육의 위상은 90년대 이후로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스웨덴에서는 모의 고용비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아동보육시설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사회에서 공적보육정책이 부·모(특히 여성)의 노동력을 상품화시킴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젠더평등을 달성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제3의 목적으로 이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Nyberg, 2000, Nyberg, 2004 재인용).

가, 재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특히, 탈가족화를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탈가족화 정책은 부·모의 노동력을 탈가족화시켜 상품화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탈가족화와 상품화의 주체는 앞서 가족화와 탈상품화의 논의에서와 같이 노동하는 개별 주체인 부·모 각각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3) 일-가족양립정책의 젠더통합의 과제¹⁰⁾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 지원 정책인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이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양립 시킴으로써 일-가족양립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일과 가족생활이 양립된다는 것이 곧 생계부양과 돌봄의 과제가 남성과 여성 간에 평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일-가족양립 정책의 수준이 반드시 보편적 생계부양과 돌봄의 수준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를 비교했을 때, 프랑스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고,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등 일-가족양립지원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족 내에서 돌봄노동에 대한 남녀분담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고, 일-가족양립과제의 책임이 주로 개별가족에게 부과하는 영국에서 더욱 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Gregory and Windebank, 2000). 또한 가장 여성친화적인 국가들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스웨덴에서도 부모휴가의 대부분을 여성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¹⁾ 그러므로 노동권과 부모권의 과제는 정책의 지원수준과 함께 노동권과 부모권이 젠더 통합적으로 보장되고 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과 관련해 남녀 간 역할 공유의 문제가 집중되어서 나타나는 영역은 공적아동보육과 같은 탈가족화·상품화의 문제이기보다는 가족화·탈상품화 정책인 부모휴가 등에서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Bergqvist and Jungar, 2000). 왜냐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아동이 보육시설에서 돌보아질(탈가족화) 때 부·모의 역할 공유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부모휴가는 부·모 중 누군가가 임금노동을 중단하고 가족 내에서 아동을 돌봐야하기 때문에 남녀 간 역할 공유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실제로 가족화와 탈상품화를 통한 부모권 보장 정책이 성 분리적일 때 일-가족양립은 순차적 또는 차이에 근거한 양립형태¹²⁾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윤홍식, 2005). 성 분리에 근거한 두 가지 양립은

10)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남성의 역할, 특히 부모권 보장에서 남성참여를 제도하기 위한 젠더통합의 과제는 구체적 분석의 과제로 상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분석을 위한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모휴가의 권리성격과 아버지할당제에 관한 정책변수가 현재까지는 모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권리성격에서 개인권리가 가족권리에 비해 젠더통합적이라고 주장하지만(Smith, 2001), 현실에서는 개인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들보다 개인과 가족권리를 혼용하는 국가들의 젠더통합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Leria, 2002).

11) 스웨덴에서는 전체 부모휴가의 91.0%를 여성이 사용하고 있다(Bruning and Platenga, 1999).

12) 순차적 일-가족양립은 여성이 양육자와 생계부양자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암묵적으로 돌봄의 주체로 여성을 전제한 양립정책이다(윤홍식, 2005: 296-303). 예를 들어, 부모휴가는 명목적으로 성 중립적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대부분의 부모휴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 양립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순차적 양립에서 양립의 주체는 여성으로 제한되고 있다. 차이에 근거한 일-가족양립은 일-가족양립이 성별분업에 근거한 가구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여성은 돌봄을 책임지고 남성은 생계부양을 담당함으로써 개인단위가 아닌 가족단위에서의

여성억압의 주요한 측면인 공·사적영역의 분리를 존치시킴으로써 결국 노동권과 부모권이 통합되지 못하는 모순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므로 젠더통합적인 일-가족양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생계부양자와 보살피는 자라는 역할이 공유되어야 한다. 즉, 부모권 보장과 관련 정책이 보편적 일-가족양립을 지향하는가 아니면 순차적·차이에 근거한 양립을 지향하는가는 구체적 정책이 보편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3. 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방법: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분석

본 논문은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을 통해 OECD 21개국을 유형화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과 다차원척도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국가로부터 출발해 이들 국가들을 유사성(similarity)의 특성으로 묶어내고 상이성(dissimilarity)의 요소를 분리시키기 위해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방법 중 병합적(agglomerative) 방법을 사용하였다(김기영·전명식, 1994). 21개별국가의 관찰벡터, $X_i=(X_{i1}, X_{i2}, X_{i3}, \dots, X_{ip})$ 와 $X_j=(X_{j1}, X_{j2}, X_{j3}, \dots, X_{jp})$ 간의 거리($d_{ij}=d(X_i, X_j)$)를 측정해, 모든 국가사례에 대해 얻은 $N*N$ 의 거리행렬(D)을 통해 가까운 국가끼리 묶어가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였다¹³⁾. 군집분석을 통해 OECD 21개국을 유형화한 다음 2차원 평면상에서 사례 간 근접성을 높이고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반복적 절차를 통해 최적의 해를 구하는 다차원척도분석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이 비교국가들의 동질적 정책특성을 바탕으로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통계적 방법이라면 다차원척도분석은 연구대상국가들 간의 동질성을 거리로 환산해서 2차원 평면에 좌표로 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충련, 2003). 그러므로 다차원척도 분석의 핵심적 개념은 연구대상들 간의 동질성의 정도를 2차원 평면위에 거리로 환산해서 인지도(Perceptual Map)의 형태로 나타냄으로써 비교국가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보여주는 연구방법이다.

2) 분석자료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을 통해 OECD 국가들의 일-가족양립(노동권과 부모권 양립)지원 수준을 유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인 OECD 21개국은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태

일-가족양립을 지향하는 형태이다.

- 13) 그러나 군집분석은 어떠한 군집분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군집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상이한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으나 홍두승(1988)에 따르면 군집분석의 도구적 목적의 유용성을 판단했을 때 분석결과의 유용성은 인정된다.

리, 포르투갈, 그리스, 일본, 미국, 한국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보면 ① 모스와 디븐(Moss and Deven, 1999)이 편집한 “Parental leave: Progress or Pitfall?” 보고서를 통해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등 15개국의 부모휴가와 관련된 정보를 얻었다. ② OECD(2002; 2003a; 2004; 2005)의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보고서에서는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위스,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영국 등 13개국의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③ 2004년 4월 19-2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부모휴가와 아동양육에 관한 심포지엄(Peer Review) 자료에서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7개국의 부모휴가와 아동양육에 관한 정보를 정리했다. ④ 스미스(Smith, 2001)의 논문을 통해서 벨기에,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태리, 포르투갈 등 12개국의 부모휴가에 관한 정보를 인용했다. ⑤ 룩셈부르크 소득연구(Luxemburg Income Study: LIS)의 가족정책자료(Family Study Database, Version 2, 2003) 자료에서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미국 등 11개국의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⑥ 브레드쇼와 핀치(Bradshaw and Finch, 2002)의 “A Comparison of Child Benefit Packages in 22 Countries” 보고서로부터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미국 20개국의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에 관한 자료를 인용했다. ⑦ 한국에 관한 정보는 관련부처(여성가족부, 노동부 등)와 통계청 자료를 통해 취합했다. 개별국가에 대한 중복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고, 발간년도가 같을 경우 해당국가에서 작성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3) 사용된 변수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이 OECD 국가들의 노동권과 부모권의 양립(일-가족양립) 수준을 모두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일-가족양립과 관련된 정책은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을 통해 OECD 국가들의 노동권과 부모권 지원 정책 수준을 유형화하려는 이유는 첫째,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은 해당 국가의 일-가족양립지원 수준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변수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Kreimer, 2004; Sutela, 2004; Nyberg, 2004). 둘째는 다차원적도와 군집분석은 변수간의 비중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정책과 비중이 작은 정책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정책들을 병렬적으로 투입했을 때 오히려 OECD 국가들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모휴가가 부모권을 지원하는 정도는 각국의 부모휴가가 가지는 구체적인 제도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국, 아일랜드 등과 같이 부모휴가가 제도화 되어 있지만 무급이라면 이들 국가의 부모휴가는 유급부모휴가를 제도화한 국가보다 부모권 지원 수준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호주의 경우 무급부모휴가를 48주간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벨기에는 유급휴가를 제도화하고 있지만 낮은 수준의 소득대체율과 부모 각각 13주 만을 보장해주고 있다면 어떤 제도가 부·모의 부모권을 보다 더 적절히 지원하고 있는지는 그 자체로 논쟁적이다.

공적보육도 부모휴가와 유사하다. 이태리의 3-5세 보육비율은 95%로 포르투갈의 75%보다 20%포인트 높지만, 0-2세 보육비율은 포르투갈이 12%로, 이태리의 6%보다 두 배나 높다. 즉, 특정 국가는 특정한 부문에서 부·모의 노동력을 상품화·탈가족화 하는데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 반면 다른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있다. 또한 노동권과 부모권의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각각의 요소가 기여하는 비중은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분석에서는 개별국가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들 개별 변수들이 어떠한 비중으로 역할을 하는 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즉,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분석에서 각각의 변수들은 동일한 비중으로 분석되어 진다.¹⁴⁾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급여대체수준: 부모휴가기간 중 임금소득이 대체되는 비율로 측정하였고, 정률인 경우 평균임금 수준과 비례하여 비율을 결정하였다. ② 기간: 공식적으로 부모휴가를 보장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③ 유연성: 두 가지로 측정하였는데 시간제 이용이 가능할 경우 1점, 불가능할 경우 0점, 부모휴가기간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을 경우 1점, 불가능할 경우 0점으로 계상하고 시간제 사용과 분절사용 점수를 합산했다. ④ 0-2세 보육비율: 2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비율로 측정했다. ⑤ 3-5세 보육비율: 3세부터 5세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비율로 측정했다. ⑥ 보육예산: GDP대비 보육예산지출의 비율로 정의했다. ⑦ 순보육비용: 부·모 각각의 임금소득이 남녀노동자의 평균임금소득에 해당할 경우에 지출되는 순 보육비용을 실질구매력(PPP)기준 2001년 미국 달러화(USD)로 표시하였다. 분석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OECD 21개국의 부모휴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휴가의 권리성격과 아버지할당제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였다.

4) 분석의 흐름

본 연구의 분석은 3단계 과정을 거친다. 1단계는 부모휴가의 급여대체수준, 기간, 유연성 등 3가지 지표를 통해 OECD 21개국의 부모권 지원 수준을 집산화하였다. 2단계에서는 노동권 지원수준을 0-2세, 3-5세 보육비율, GDP대비 지출, 순보육비용을 통해 분석 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과 관련된 변수를 모두 사용하여 OECD 21개국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3단계 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부·모에 대한 노동권 및 부모권의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지원수준을 통해 OECD 21개국을 비교분석 하였다.

14) 현실세계에서 개별 변수들이 서로 다른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다차원척도분석과 군집분석의 방법론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 관적으로 각제도의 특성을 지수화해서 국가 간의 차이를 유형화하는 방법보다는 각 사례 간의 상이성과 비상이성을 근거로 사례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군집과 다차원척도분석이 방법론적 측면에서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4. 분석결과

1) OECD 21개국의 부모휴가와 아동보육

(1) 부모휴가(육아휴직)

스위스를 제외하고 OECD 20개국은 부모휴가를 제도화하고 있다. <표 1>을 보면 부모휴가의 권리 성격을 보면 크게 개인권리, 혼합권리, 가족권리로 구분된다. 개인권리는 부모휴가의 권리가 부·모에게 각각 주어지며, 부여된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다. 개인권리의 장점은 부·모 각각에게 휴가를 이용할 개별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부·모 각각이 휴가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¹⁵⁾ (Smith, 2001). 그러나 현실에서 개인권리가 젠더 통합적이라는 주장과 달리 개인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들보다 개인과 가족권리를 혼합한 국가들의 남성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혼합권리는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적용하는 방식이다. 부모휴가의 일정기간은 부·모 중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특정기간은 반드시 부·모 각각이 이용하도록 제도한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등은 가족권리 차원에서 부모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가족권리로 부모휴가를 보장했을 경우 부·모 중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여성이 이용하고 있다(Bruning and Plantenga, 1999).

급여수준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임금의 100%를 보존하고 있는 노르웨이부터 무급인 그리스, 네덜란드 등이 있다. 또한 정률의 급여를 제공하는 독일, 벨기에 등의 경우, 급여수준은 대체로 평균임금의 20%내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임금에 비례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부모휴가의 기간은 아일랜드가 가장 짧은 22주를 보장해 주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이 가장 긴 156주를 보장해 주고 있다. 부모휴가 사용의 유연성 여부는 부모휴가 기간 중 시간제 노동을 할 수 있는지와 부모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통해 점검해 보았다. 그리스, 네덜란드 등 10개국이 시간제와 분할사용이 모두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부·모가 일-가족양립 과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제도화되어있다. 다음으로 덴마크, 미국 등 5개국은 시간제와 분할사용 중 한 가지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 등 5개국은 시간제와 분할사용이 모두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아버지할당제는 부의 부모휴가 참여를 제도화시킴으로써 가족 내 돌봄 과제를 부·모가 함께 나누도록 한 정책이다. 아버지할당제의 제도화 방식은 가족권으로 부여되는 부모휴가기간 중 일정 기간을 부에게 할당하는 할당 방식, 일정기간 이상을 부가 사용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는 인센티브방식, 부모 각각에게 동일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15) 그러나 현실에서 개인권리로 부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그리스, 네덜란드, 미국, 벨기에, 영국,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에서 부모휴가의 대부분은 여성이 이용하고 있으며, 남성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 부모휴가 기간 중 각각 4주, 8주의 아버지할당기간을 제도화하고 있다. 인센티브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이태리, 핀란드 3개국이다. 이들 3개국은 부모휴가 기간 중 일정기간을 부가 사용할 경우 각각 6개월, 1개월, 1~12일씩 부모휴가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균등분할 방식은 부모 각각에서 동일한 부모휴가 기간을 부여하고, 부모 각각의 권리를 서로에게 이전할 수 없게 만든 형태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가장 젠더통합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균등분할을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 중 벨기에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급휴가이므로 남성이 부모휴가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벨기에의 경우도 유급휴가를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대체율로 인해 남성이 부모휴가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LIS, 2003). 정리하면 탈상품화와 가족화를 통한 부모휴가의 부모권 지원 수준은 각국의 제도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휴가가 개인권리로 주어지고, 급여수준이 높고, 기간은 1년 내외고, 사용의 유연성이 보장되며, 할당방식의 아버지할당제를 실시할 때 젠더 통합된 부·모 노동력의 탈상품화와 가족화 지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Leria, 2002; Smith, 2001).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노르웨이, 스웨덴이 부모휴가의 권리성격이 혼란권리인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실제로 노르웨이와 스웨덴 여성의 부모휴가 이용률은 각각 100%와 99%에 이르며, 남성 참여율은 각각 69%, 46%에 이르고 있다(Bruning and Plantenga, 1999). 반면 같은 사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덴마크는 급여수준과 유연성만을 충족시키며, 부·모의 이용률은 각각 3%와 33%에 그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유연성 조건만 충족하는데 모의 이용률은 96%에 이르지만 부의 이용률은 0%에 가깝다.

<표 1> OECD 21개국의 부모휴가(Parental leave) 현황

| 국가 | ① 권리성격 | ② 급여수준 ^④ | ③ 기간* | ④ 유연성 | | ⑤ 부 할당 |
|--------------------|--------|---------------------|-------|--------|-------|------------|
| | | | | 시간제 사용 | 분할 사용 | |
| 그리스 | 개인 | 무급 | 15주 | 가능 | 가능 | - |
| 네덜란드 ^㉑ | 개인 | 무급 | 26주 | 가능 | 가능 | 균등분할(13주) |
| 노르웨이 ^㉒ | 개인+가족 | 100% | 42주 | 가능 | 가능 | 할당형(4주) |
| 뉴질랜드 ^㉓ | 가족 | 32% | 38주 | 불가 | 불가 | - |
| 덴마크 ^㉔ | 가족 | 100% | 32주 | 불가 | 가능 | - |
| 독일 | 가족 | 24%(정률) | 156주 | 가능 | 가능 | - |
| 미국 ^㉕ | 개인 | 무급 | 24주 | 불가 | 가능 | 균등분할(12주) |
| 벨기에 | 개인 | 37%(정률) | 26주 | 가능 | 가능 | 균등분할(13주) |
| 스웨덴 ^㉖ | 개인+가족 | 67% | 62주 | 가능 | 가능 | 할당형(8주) |
| 스위스 | - | - | - | - | - | - |
| 아일랜드 ^㉗ | 개인+가족 | 무급 | 22주 | 가능 | 가능 | - |
| 영국 ^㉘ | 개인 | 무급 | 26주 | 불가 | 가능 | 균등분할(13주) |
| 오스트리아 ^㉙ | 개인 | 31%(정률) | 104주 | 가능 | 가능 | 인센티브형(6개월) |
| 이태리 ^㉚ | 가족 | 30% | 43주 | 가능 | 가능 | 인센티브형(1개월) |

<표 1> 계속

| | | | | | | |
|------|-------|---------|------|----|----|--------------|
| 일본㉑ | 가족 | 30% | 44주 | 가능 | 불가 | - |
| 캐나다 | 가족 | 52% | 35주 | 불가 | 불가 | - |
| 포르투갈 | 개인 | 무급 | 13주 | 불가 | 불가 | - |
| 프랑스 | 가족 | 39%(정률) | 156주 | 가능 | 불가 | - |
| 핀란드㉒ | 개인+가족 | 65% | 32주 | 가능 | 가능 | 인센티브형(1~12일) |
| 한국㉓ | 가족 | 23% | 40주 | 불가 | 불가 | - |
| 호주㉔ | 가족 | 무급 | 48주 | 불가 | 불가 | - |

㉑ 네덜란드는 부모 각각에게 13주간의 무급부모휴가를 보장하고 있다(LIS, 2003). 아버지할당제를 도입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모 각각의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아버지할당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㉒ 노르웨이: 42주를 사용할 경우 100%임금대체, 52주를 사용할 경우 80%임금대체 (Bradshaw and Finch2002). ㉓ 뉴질랜드: 2001년부터 100% 임금이 보존되는 12주간의 부모휴가와 무급인 26주의 부모휴가로 구성되어 있다. 총 부모휴가기간의 합은 38주이다 (OECD, 2004). 31.6%는 $\{(12\text{주} \times 100) + (26 \times 0)\}$ 을 전체 부모휴가 기간인 38주로 나눈 값이다. ㉔ 덴마크: 2002년 아버지할당제의 폐지로 부모휴가 권리의 성격이 가족+개인권리에서 가족권리로 변화되었다 (OECD, 2003a). 아버지할당제의 폐지와 함께 26주간의 아동양육휴가도 폐지되었고, 부모휴가는 10주에서 32주로 대폭 확대되었다 (Pylkkanen and Smith 2004). OECD(2002)자료에 따르면 많은 부모휴가 이용자가 부모휴가 기간 중 급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LIS(2003)의 자료에 따르면 80%가 임금수준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어 덴마크의 소득대체율을 100%라고 기록했다. ㉕ 미국: 공식명칭은 가족휴가 (family leave)이다. 이 휴가에는 모성, 부성, 부모, 간호휴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부모는 각각 12주간의 휴가이용이 가능하다 (Bradshaw and Finch2002). ㉖ 스웨덴: 부모휴가는 2002년 아버지할당기간을 8주로 늘리면서 69주로 늘어났다. 그러나 스웨덴의 부모휴가는 모성휴가와 통합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모가 자녀 출산을 전후해서 사용하는 7주를 제외하고 62주를 부모휴가로 간주할 수 있다. 처음 59주는 8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해주고, 나머지 13주는 정액급여인테 대략 평균임금의 9%수준이다. 그러므로 62주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대략 67.4%가 된다 $\{(59 \times .80) + (13 \times .09)\} / 62 = 67.4$. (OECD, 2005). ㉗ 아일랜드: 모성휴가 후 부모 중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8주간의 무급부모휴가와 8주간의 휴가 이후 각각의 부모에게 주어지는 14주간의 무급부모휴가가 있다 (OECD, 2003a). ㉘ 영국도 네덜란드와 같이 부모 각각이 12주간의 무급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LIS, 2003). ㉙ 오스트리아: 부모휴가의 권리 성격은 2000년을 전후로 아버지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조치를 통해 가족권리에서 개인권리로 변화하였음. 1999년 개정으로 부모휴가를 2회(최소 3개월)에 걸쳐 나누어 쓸 수 있게 했음 (Kreimer, 2004). 고용을 전제한 자격조건은 2002년 이후 폐지되었으나 가족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어 야한다. '아버지할당제'라는 명시적 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부모휴가기간의 일정기간 이상을 부가 사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유급부모휴가가 6개월간 연장 된다 (Moss and Deven, 1999: 311). ㉚ 이태리: 만약 부가 부모휴가를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부모휴가 기간이 1개월 연장 된다 (Moss and Deven, 1999; Bradshaw and Finch2002). ㉛ 일본: 44주간의 휴가 기간동안 이전 임금의 30%를 보존해주고, 휴가에서 직장으로 복귀한 후 6개월 동안 일을 계속하면 이전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임금(휴가기간 동안 매월에 해당하는)을 일시금으로 지급해 준다 (OECD, 2003a). 여기서 휴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소득보존 비율만을 계상하였다. ㉜ 핀란드: 2003년부터 부가 부모휴가를 12일(주중) 사용할 경우 부성휴가가 1~12일 연장될 수 있다 (Sutela, 2004). ㉝ 한국: (직업군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동이 만 1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1년을 사

용할 수 있으나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면 육아휴직기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5개월, 45주 정도가 된다. 또한 한국의 경우 정률로 월 4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2004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임금 1,750,421원(통계청, 2005)의 대략 22.9%정도에 해당한다. 2006년 1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취업 의사를 가진 대학졸업 예정자와 처음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구직자들도 고용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㉗ 호주: 법률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는 없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간에 합의된 유급 부성휴가와 부모휴가가 있다(OECD, 2002). ㉘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는 정률급여이나 여기서 표시한 급여비율은 모간과 지펠(Morgan and Zippel, 2003, 71)이 계산한 평균임금대비 급여수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부모휴가 기간이 개월로 표시된 경우 1개월을 4.3주로 계산해 주단위로 전환했다.

(2) 아동보육

① 0-2세과 3-5세 아동보육: <표 2>는 아동보육시설 이용실태, 정부지원 수준, 부모의 비용부담 등을 통해 OECD 21개국의 아동보육실태를 개괄한 것이다. 먼저 0-2세 아동의 보육시설이용비율을 보면 덴마크와 스웨덴이 각각 64%, 65%로 OECD 21국 중 가장 높다. 이어서 벨기에 41%, 뉴질랜드 40%, 프랑스 39%, 노르웨이 37% 순으로 조사되었다. 핀란드는 전통적으로 사민주의 국가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0-2세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비율은 25%에 그쳐 보수주의 국가인 프랑스, 벨기에와 자유주의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등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핀란드의 영아보육정책이 시설 이용보다는 가정아동양육수당(home child care allowance) 정책으로 제도화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OECD, 2005, Sutela, 2004). 그리스,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 이태리, 캐나다, 한국은 시설이용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3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보육비율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는 아동의 초기양육자로 누구를 상정하고 있는가를 반증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젠더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의 경우 아동에 대한 초기양육의 책임을 '어머니'에게 강제해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게 나타난다. 반면 젠더역할에 대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경우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두 번째는 슬리보스(Sleebos, 2003)가 지적한 바와 같이 0-2세 아동양육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탈가족화)할 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상품화)를 용이하게 한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논의와 연관선상에서 양육의 사회적 부담을 통해 출산-양육과 경제활동 참여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양립 가능한 문제로 인식됨으로써 해당 국가의 출산력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캐슬러스(Castles, 2003)는 0-2세 아동에 대한 공적보육시설 이용률은 출산력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비율은 0-2세 아동의 보육시설이용비율처럼 국가들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등은 3-5세 아동의 보육시설이용비율이 90%를 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는 1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징적인 점은 0-2세 아동의 보육시설이용비율이 5%에 불과한 스위스의 3-5세 아동의 보육시설이용비율이 95%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0-2세 아동의 보육시설이용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는 그리스, 캐나다, 한국 등도 3-5세 아동의 보육시설이용

비율은 각각 46%, 23%, 50%에 이르고 있다. 0~2세 보육과 달리 3~5세 보육은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조기)교육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육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0~2세 보육비율의 경우 보육시설이용비율이 가장 높은 스웨덴(65.0%)과 가장 낮은 아일랜드(1.0%)의 차이가 무려 64.0%포인트인데 반해 3~5세의 보육비율의 차이는 15.0%포인트에 불과하다. 정리하면 OECD 국가들에서 0~2세 아동보육을 위한 부·모 노동력의 탈가족화와 상품화 수준은 이질적인 반면, 3~5세 아동보육은 상대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② 정부지원과 부모부담: GDP대비 아동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수준을 보면 덴마크의 GDP대비 지출비율은 2.7%로 OECD 21개국 중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스웨덴(1.9%), 노르웨이 (1.6%), 핀란드(1.5%) 순이다. 이렇듯 사민주의 국가들의 보육지원수준이 높은 이유는 보육지원이 보편주의 원칙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경우를 보면 1960년대 중반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인해 보육지원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잔여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전환되었다 (Borchorst, 2002). 또한 정부의 지원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0~2세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의 경우 21개국 중 2위, 스웨덴 1위, 노르웨이 5위 등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뉴질랜드, 한국 등은 GDP대비 정부예산 지출비율이 0.3%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은 0.1%로 OECD 21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육비용에 대해 정부지원을 제외한 부·모의 순보육비 부담수준을 보면 미국이 월 평균 997USD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영국(593USD), 아일랜드(578USD), 뉴질랜드(575USD), 네덜란드(565USD), 캐나다(499USD)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자유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들에서 부모의 순보육비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아동보육을 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O'Connor, Orloff and Shaver, 1999).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서 시장을 통해 아동양육을 탈가족화시키기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Esping-Andersen, 1999, O'Connor et al., 1999). 또한 일반적으로 탈상품화 수준이 높다고 간주되는 네덜란드에서 부모의 보육비부담이 높은 이유는 여성의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기 때문에, 국가의 아동보육에 대한 역할이 취약한 반면 시장이 상대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즉, 남성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복지제도의 수준은 높으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한 복지수준은 낮기 때문이다(Bussemaker and Kerbergen, 1994). 부모의 보육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덴마크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북유럽 국가들에서 보육비부담이 낮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상대적으로 국가의 지원수준이 높은 국가들일수록 부모의 보육비용부담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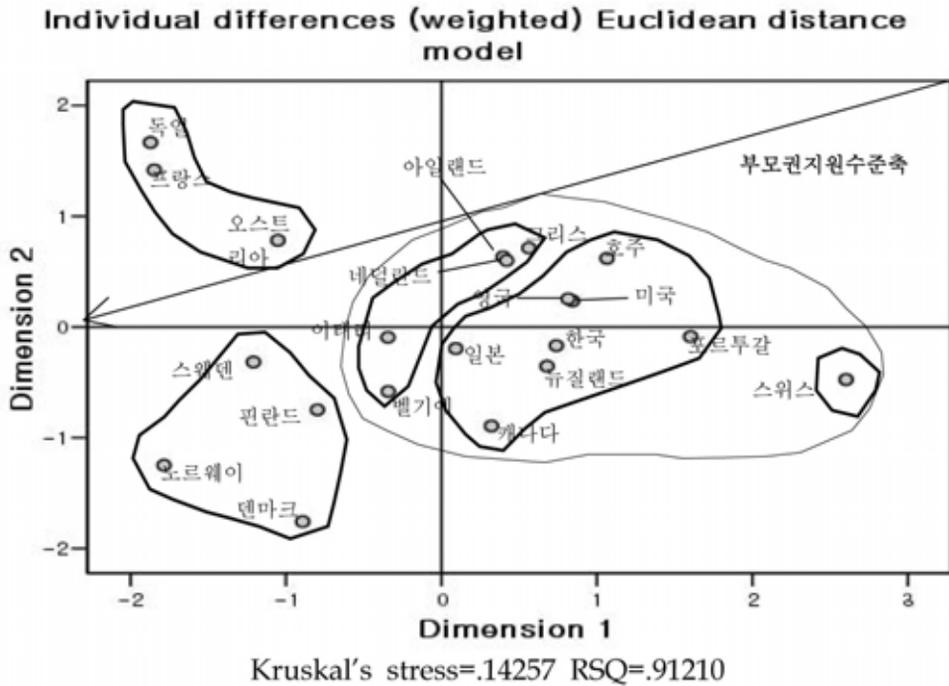
<표 2> OECD 21개국의 아동보육: 이용비율, 정부지원, 및 부·모 부담

| | 보육시설등록률* %(년도) | | GDP대비 아동보육지원 지출비율** | 순보육비 부담액 |
|--------|-------------------|---------|---------------------------|-------------|
| | 0-2세 | 3-5세 | | |
| 그리스㉑ | 3(00) | 46(00) | 0.4 | 296 |
| 네덜란드 | 19(99) | 90+(99) | 0.6 | 565 |
| 노르웨이㉒ | 37(00) | 78(00) | 1.6 | 316 |
| 뉴질랜드㉓ | 40(00) | 98(00) | 0.3 | 575 |
| 덴마크㉔ | 64(99) | 91(99) | 2.7 | 257 |
| 독일 | 9(00) | 54(99) | 0.8 | 347 |
| 미국 | 16(99) | 54(99) | 0.5 | 997 |
| 벨기에㉕ | 41(99) | 75(00) | 0.5 | 319 |
| 스웨덴 | 65(02) | 90(02) | 1.9 | 233 |
| 스위스㉖ | 5(00) | 95(00) | 0.3 | 515 |
| 아일랜드㉗ | 1(00) | 50(00) | 0.5 | 578 |
| 영국 | 15(99) | 42(99) | 0.5 | 593 |
| 오스트리아㉘ | 13(01) | 86(01) | 0.9 | 179 |
| 이태리㉙ | 9(98) | 71(98) | 0.3 | 287 |
| 일본㉚ | 18(01) | 89(01) | 0.3 | 356 |
| 캐나다 | 5(98) | 23(98) | 0.3 | 499 |
| 포르투갈 | 22(98) | 75(98) | 0.5 | 234 |
| 프랑스 | 39(00) | 100(00) | 1.3 | 287 |
| 핀란드 | 25(98) | 68(98) | 1.5 | 183 |
| 한국㉛ | 6(00) | 50(00) | 0.1 | 344 |
| 호주㉜ | 31(99) | 47(99) | 0.2 | 524 |

㉑ 그리스: 46%는 3-5.5세 아동의 보육비율임 (Bradshaw and Finch2002). ㉒ 노르웨이: 37%는 1-2세, 78%는 2세 이상 (Bradshaw and Finch2002). ㉓ 뉴질랜드: 38%는 1-2세 아동의 비율 (Bradshaw and Finch2002). ㉔ 덴마크: 64%는 6개월에서 2세 (OECD, 2002). ㉕ 벨기에: 41%는 3개월에서 2.5세 아동의 보육시설이용비율이고, 75%는 2.5세에서 6세까지 아동의 보육시설이용 비율임 (Bradshaw and Finch2002). ㉖ 스위스: 전국 통계는 자료접근이 불가능함. Ticino 지역의 보육비율임. 95%는 4세 아동 (OECD, 2004). 보육비부담은 2004년도 OECD 보고서 109쪽 Chart 4.1.에서 제시된 스위스와 포르투갈의 종일보육료 비율을 계산해 포르투갈의 비용에 곱해서 얻은 값이다. 보육비부담 1은 1.27배, 보육비부담 2는 2.20배 ㉘ 오스트리아: 13%는 0-3세, 86%는 3-6세 (OECD, 2003a). ㉚ 일본: 18%는 0-3세, 89%는 3-6세 (OECD, 2003a). ㉛ 한국자료는 통계청의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보육비율은 아동이 유치원, 어린이방, 놀이방에 등록된 경우를 산정하였다.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순보육비는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대도시 기준 종일제 보육료 244,000원(유희정·강정희, 2002) 실질구매력 가치를 환산하기 위해 1.46배한 수치에 (2004년 기준),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되는 달러환율 1,035원을 적용 계산하였다. ㉜ 호주: 31%는 0-3세, 47%는 4세 이상 (OECD, 2002). ㉙ 이태리의 GDP대비 정부지출자료는 OECD(2003b)보고서에서는 이용가능하지가 않

아, 브래드쇼와 핀치(2002)의 보고서 236쪽 평균소득의 이인생계부양자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수위를 참고했다. 이태리의 세후지원수준은 일본과 그리스의 중간에 위치해 GDP 대비 지출비율을 0.3으로 추정했다. * 보육시설이용비율 자료 중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포르투갈, 핀란드, 호주 자료는 OECD, 2002, 2003, 2004, 2005 자료를 참고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브래드쇼와 핀치의 2002년 (Bradshaw and Finch2002) 자료를 참고하였다. **공식보육과 유치원교육에 대한 각국의 GDP대비 예산지출비율 (OECD, 2003b).

2) 부모권(탈상품화·가족화) 지원에 따른 분석



<그림 1> 부모권 지원에 대한 다차원척도분석

<그림 1>은 부모휴가의 급여수준, 기간, 유연성을 기준으로 다차원척도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군집은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이다. 군집계수(cluster coefficient)가 작을수록 국가 간 동질성이 높다. 군집계수 2.5를 기준으로 군집화 했을 때 OECD 21개국의 군집 수는 5개이다. 먼저,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이태리, 벨기에 6개국이 하나의 군집(이하 네덜란드 군집)으로 묶이고(coefficient=1.276), 다음으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4개국이 하나의 군집(이하 스웨덴 군집)으로 묶였다(coefficient=1.879). 세 번째는 한국, 캐나다, 호주 등 8개국이 동일한 군집(이하 한국 군집)을 형성하였고 (coefficient=1.926), 마지막으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3개국이 하나의 군집으로 묶였다(이하 독일 군집) (coefficient=2.145). 스위스는 독자적인 국가군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군집계수 5를 기준으로 군집을 구분하면 크게 3개의 군집으로 묶이는데 독일 군집과 스웨

덴 군집은 여전히 독자적인 군집을 형성하지만 네덜란드와 한국 군집은 스위스와 함께 동일한 군집을 형성하였다(coefficient=0.4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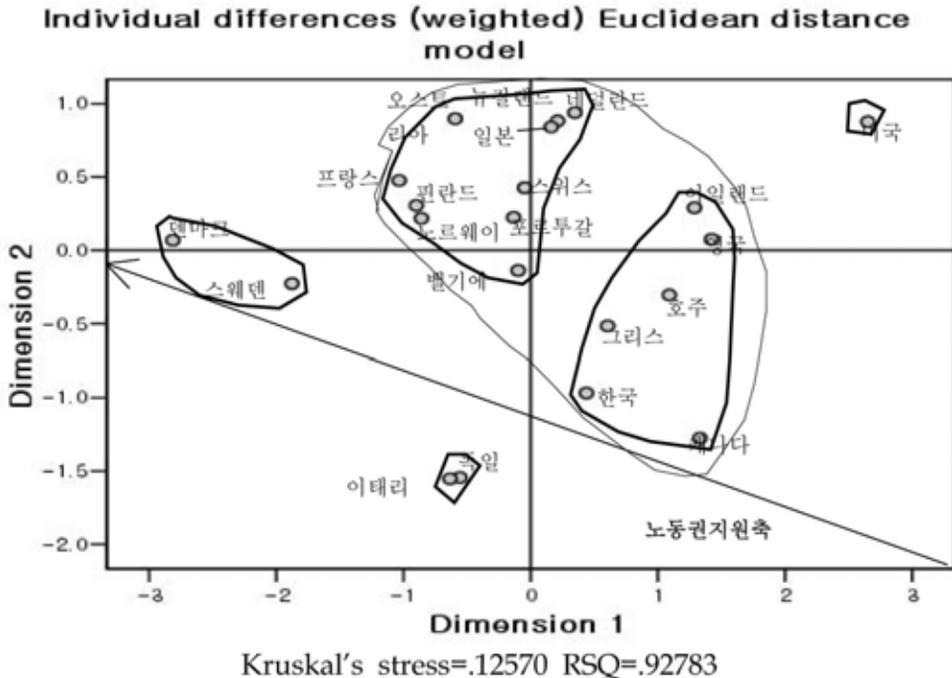
다차원적도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석오차(Kruskal's stress)는 0.14257로 도출된 결과에 대한 적합도 수준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권에 근거한 다차원적도분석 결과가 국가들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 변량의 91.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SQ=.91210). 즉, 나머지 8.8%의 상이성과 유사성에 관한 변량은 본 다차원적도분석을 통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권과 관련된 변수들만을 통해 국가들을 유형화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모권지원측에서 좌하향할수록 탈상품화와 가족화의 지원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군집이고, 우상향할 수록 낮은 군집이라고 할 수 있다. 예상했던 것과 같이 북유럽 4개국 군집의 탈상품화와 가족화를 통한 부모권 지원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류복지국가 논의에서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를 보여주는 시민주의 4개국이 탈상품화와 가족화를 통해본 부모권 지원에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독일 군집, 네덜란드 군집, 한국 군집이 뒤를 따르고, 부모휴가를 제도화하고 있지 않은 스위스의 지원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 군집의 부모권 보장 수준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상대적으로 긴 부모휴가 기간, 높은 유연성 등으로 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한국이 속한 군집의 국가들의 특성은 대체로 부모휴가 급여수준이 낮고, 기간은 짧으며,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노동권(탈가족화·상품화) 지원에 따른 분석

<그림 2>는 노동권 지원과 관련된 변수(0-2세, 3-5세 보육비율, 정부지출, 보육비부담)들을 이용한 다차원적도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군집계수 4.7을 기준으로 OECD 21개국을 5개 군집으로 나누었다. 부모의 노동력을 탈가족화·상품화 시키는 노동권 지원 수준을 통해 OECD 21개국을 군집화한 결과는 탈상품화·가족화(부모권)를 기준으로 군집화한 <그림 1>과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부모권 지원 분석에서 동일한 군집으로 묶여 있던 시민주의 4개국 중 덴마크와 스웨덴만이 독립적인 군집을 형성하였고(coefficient=1.453),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네덜란드 등과 같은 군집을 형성하였다(coefficient=4.693). 독일 군집도 해체되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네덜란드 등과 한 군집을 형성하였고, 독일은 이태리와 독립적인 군집을 형성하였다(coefficient=1.252). 미국도 기존의 한국 군집에서 이탈해 독자적인 군집을 형성했다. 한국은 그리스, 호주,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와 함께 새로운 군집을 형성하였다(coefficient=3.144).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유사한 시민주의 국가로 간주되는 스웨덴 군집에서 벗어난 이유는 0-2세 보육비율이 덴마크나 스웨덴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0-2세 보육비율이 각각 64%, 65%에 이르고 있는 반면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각각 25%, 37%에 불과해 일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국가들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1985년과 1998년 핀란드와 노르웨이에서 각각

제도화된 ‘가정아동양육수당’과 함께 이들 국가들에서 전통적 모성역할이 스웨덴과 덴마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Hilamo and Kangas, 2003). 미국이 별도의 군집을 형성한 이유는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부모가 부담해야하는 월평균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구매력(PPP) 기준으로 월 평균 비용부담은 997USD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와 비교해 크기는 4배 작게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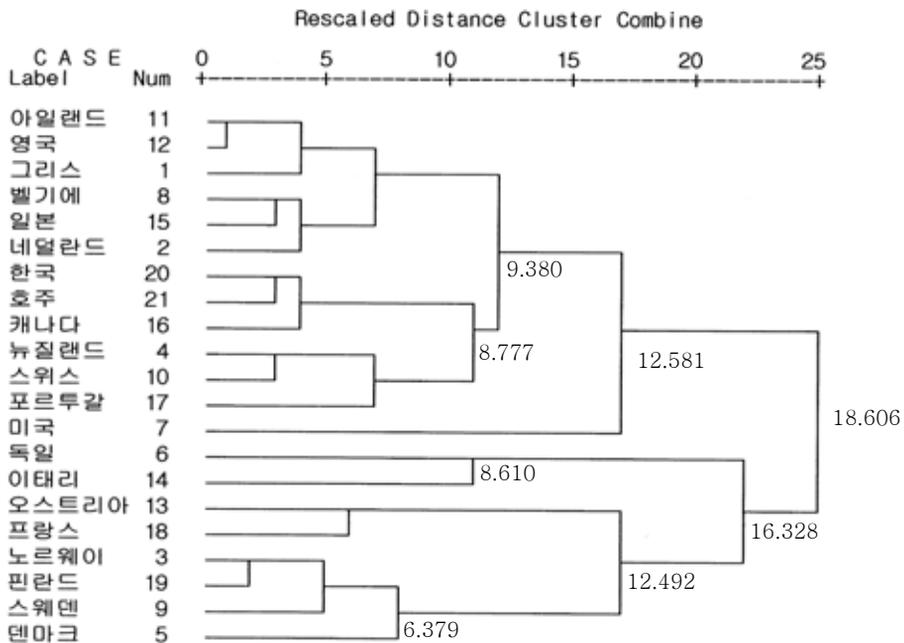


<그림 2> 노동권 지원에 대한 다차원척도분석

다차원척도분석의 오차는 0.12570으로 보통 수준의 적합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변량의 92.8%가 설명되고 있다(RSQ=.92783). <그림 2>에 표시된 노동권지원축은 군집과 개별 국가들이 축의 최상향하는 방향에 있을수록 탈가족화와 상품화(노동권)의 지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덴마크와 스웨덴 군집은 부모권 지원과 같이 노동권 지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가 속한 군집과 독일, 이태리 군집은 중간정도에 위치하고 한국이 속한 군집과 미국은 노동권 지원 수준이 5개의 군집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모권과 노동권 통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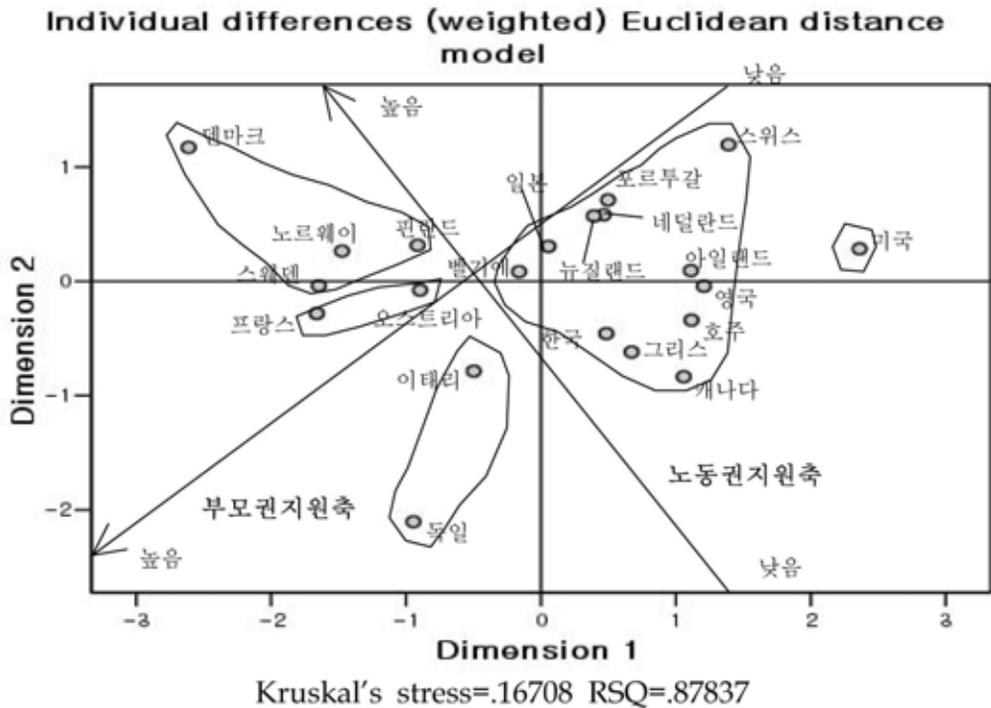
<그림 3>은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수준을 함께 고려했을 때의 OECD 21개국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이다. 군집계수 9.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얻어지는 군집 수는 5개다. 먼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군집계수 4.962에서 하나의 군집으로 묶이고, 다음으로 사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가 부모권 분석과 같이 동일한 군집으로 묶였다(coefficent=6.379). 부모권 분석에 이어 노동권과 부모권을 함께 고려했을 때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스웨덴, 덴마크와 동일한 군집으로 다시 묶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노동권과 부모권 지원수준을 함께 고려했을 때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탈)가족화와 (탈)상품화 지원 수준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는 사민주의 국가들인 덴마크와 스웨덴과 더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이태리와 독일이 노동권 분석과 같이 여전히 독립적인 군집으로 묶였으며(coefficent=8.610), 한국, 일본 등 12개국이 동일한 군집을 구성했다(coefficent=9.380). 미국은 노동권 분석과 같이 단독 국가군집을 형성했다. 다차원척도분석의 오차는 .16708로 좋지 않아 변량에 대한 설명력도 87.8%에 그치고 있다. 분석결과와 해석이 앞선 두 분석에 비해 상대적 제한성을 가진다.



<그림 3>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 군집분석

<그림 4>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권지원축(탈상품화·가족화)과 노동권지원축(탈가족화·상품화)으로 설정하였다.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

로 향하는 축이 부모권지원축으로 좌측 하단으로 갈수록 지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우측하단에서 시작해 좌측상단으로 향하는 축은 노동권에 대한 지원 정도를 나타내는 축으로 좌측상단으로 갈수록 지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유럽4국은 노동권과 부모권의 지원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2차원 평면에 좌측에 자리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부·모 노동력의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지원수준이 사민주의 4개국 보다는 낮지만 다른 국가 군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유급 부모휴가 기간이 가장 긴 국가들에 속한다.



<그림 4>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 다차원척도분석

0-2세 보육비율은 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에 비하면 낮지만 OECD 21개국 중 중간 수준에 있으며, 3-5세 보육비율은 프랑스는 100%, 오스트리아는 86%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표 2 참조). 또한 부모의 순보육비 부담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각각 287USD, 179USD로 낮은 편이다. 이태리와 독일은 부·모 노동력의 탈상품화와 가족화 수준이 높아 부모권 지원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부·모 노동력의 상품화와 탈가족화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OECD 국가 중 가장 긴 유급부모휴가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태리의 부모휴가도 급여와 기간 면에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0-2세 보육비율은 매우 낮아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GDP 대비 보육예산 집행도 독일과 이태리 각각 0.8%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속한 군집은 부모 노동력의 탈상품화와 가족화,

상품화와 탈가족화 수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임금부모휴가를 제도화하고 있지만 임금대체수준이 낮고, 기간은 중간정도이고, 휴가 사용의 유연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비율도 2세 이하는 6%에 그치고, GDP 대비 아동보육지원지출은 0.1%로 OECD 21개국 중 최하위다. 미국도 부모 노동력의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수준에서 가장 낮은 국가로 분석되었다.

5. 정리 및 정책함의를 위한 논의

본 연구는 부·모 노동력의 탈상품화·가족화와 상품화·탈가족화를 반영하는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수준을 통해 OECD 21개국을 비교분석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주류 복지국가의 논의가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기제인 탈상품화에 집중함으로써 물질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적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본 논문은 탈상품화·가족화와 상품화·탈가족화를 통해 OECD 21개국의 일-가족양립정책을 접근함으로써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돌봄이라는 신사회위험을 복지국가 분석의 틀로 수렴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신사회위험을 분석의 틀로 적용했을 때 주류복지국가 논의에서 시민주의로 분류되는 북유럽 4개국(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와 함께 높은 가족화, 상품화, 탈가족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¹⁶⁾. 그러나 보수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이 서로 다른 군집을 형성했고, 자유주의 국가의 대표 격인 미국의 경우 뉴질랜드, 호주 등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군집을 형성하였다. 즉,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국가들은 탈상품화를 준거로 했을 때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새로운 특성에 따라 분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국가의 유형화는 실업, 질병, 노령 등 구사회위험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과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신사회위험에 대한 정책대응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미하며,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시민주의 4개국은 주류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을 준거로 분석했을 때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모 노동력의 탈가족화와 상품화에 대한 지원수준만을 고려했을 때 시민주의 4개국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으로 군집화 되었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결과는 최근 OECD국가들의 보육정책을 분석한 연구에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가 동일한 유형으로 분리된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장지연·이정우·최은영·김지경, 2005). 이는 시민주의 4개국의 가족정책이 다른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 동질성을 갖지만 이들 국가들의 가족정책을 유의미하게 구분하는 상이성 또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시민주의 4개국은 각각 상대적으로 부모권을 강조하는가 아니면 노동권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이질적인 집단으로 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16) 이러한 결과는 모성권과 노동권을 중심으로 분석한 홍승아(2005)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다만 홍승아의 경우 오스트리아가 시민주의 4개 국가 함께 유형화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는 부모권의 지원 문제, 즉 가족정책의 가족화 수준이 반드시 탈상품화 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예에서 보듯 부모휴가의 탈상품화 수준은 낮지만 가족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소위 모성권(여기서는 부모권)과 노동권이 비교대상과 양자택일의 개념이 아니라 병립하는 개념으로 각각의 독자적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오스트리아 등의 제도화 방식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조금 더 깊이 천착해 본다면 이는 노동력의 가족화 수준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가족화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보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상대적으로 탈상품화 수준이 낮고 가족화 수준이 높을 때 여성과 아동의 빈곤율이 높고, 여성의 위치가 가족 내로 고착화되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Ferrarini, 2003). 결국 탈상품화와 가족화는 독립적으로 고민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즉, 탈상품화 없는 가족화는 부모권을 온전히 보장해 줄 수 없으며, 반대로 가족화 없는 탈상품화 또한 마찬가지다. 부모권의 보장은 탈상품화와 가족화라는 목적을 함께 달성할 때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원칙은 부모의 노동권 보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노동권과 부모권의 양립 또한 같은 원칙이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전달하고 있다. 첫째는 형식적인 제도도입은 시민의 노동권과 부모권 보장에 유의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양질전화(量質轉化)¹⁷⁾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정책목표의 달성은 단순히 제도도입 여부와 같은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얼마나 정책의 대상자의 실제적 욕구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는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그리스, 네덜란드 등과 같이 부모휴가를 무급으로 도입한 국가들이나 독일과 같이 낮은 수준의 임금대체를 제도화한 국가는 부·모의 부모권 보장이 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낮은 임금대체수준 또는 무급휴가는 임금노동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임금노동을 중단했을 때 적절한 수준의 생활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즉, 제도의 탈상품화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실제로 임금노동자의 부모권을 지원은 형식적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부모휴가 등 부모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틀은 갖추어져 있지만 그 대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제한되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의 2/3 이상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으며, 임금대체 수준도 23%에 불과하다. 더욱이 부모휴가(육아휴직) 이용이 자녀출생이후 1년 이내로 제한되는 등 제도운영의 경직성이 매우 높아 실제로 시민들의 부모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연석회의의 합의문과 같이 부모휴가 등 아동양육과 관련된 휴가를 실제적으로 비정규직 종사자 등에게 확대시키고, 임금대체 수준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적절한 임금대체 수준에 대한 합의된 의견은 없지만 북유럽사회의 경험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65%이상은 보존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이 강한 국가에서 부모휴가의 낮은 임금대체율은 부모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성을 여성으로

17) 양질전화는 사물의 질의변화는 양적축적이 일정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변화한다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주요한 철학적 주제이다. 예를 들어, 물은 1도 이거나 99도 모두 액체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99도에서 1도가 더해지면 물은 더 이상 액체가 아니라 기체화된다. 즉, 물은 온도가 99도에서 100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만 기체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을 기체로 전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물의 온도를 100도까지 끌어올려야하는 것이다.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가족정책에 대한 고민은 단순히 제도도입 여부로 제한되기보다는 제도를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시민의 권리의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스웨덴, 덴마크 등과 같이 높은 수준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과 양립을 한국사회가 지향하고자 한다면 이들 북유럽 사회에서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유럽 시민주의 국가에서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가족화와 탈가족화·상품화가 가능했던 감추어진 힘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력의 필요성이 증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Lewis and Åström 1991, Duvander et al., 2005 재인용)을 천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가족정책에서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탈)가족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힘은 한국사회의 여성유급노동에 대한 객관적 필요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소위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dynamic, knowledge-based economy)’는 60~70년대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 여성 노동력의 수요가 증대되었던 산업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노동시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즉, 테일러-구비와 랄슨(Taylor-Gooby and Larsen, 2004, 76)의 지적처럼 후기산업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기 어려워진다는 점은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한 기대가 산업사회와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설령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복지국가 유형을 불문하고) 대부분 비정규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Taylor-Gooby and Larsen, 2004, Gregory and Windebank, 2000; Aust and Bönker, 2004). 그러므로 한국사회에서 여성유급노동력의 필요가 어떠한 노동형태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가족정책(일-가족양립정책)의 대응형태에 대한 논의가 시장과 비시장(국가) 부문에서 충분히 검증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는 여성유급고용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이 남성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달성된 과제라면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은 소위 ‘제3의길’의 논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전통적 계급, 계층, 정치세력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연대와 동맹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신사회위험에 대한 합리적 대응은 기존의 계급과 계층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정치적)연대의 창출을 통해 가능할 것이고 한국사회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영·전명식. 1994. 『SAS 군집분석. 고려대학교 통계연구소 통계분석강의총서 9』. 서울: 자유아카데미.
- 김충련. 2003. 『SAS를 활용한 다차원척도법과 결합분석』. 서울: 자유아카데미.
- 유희정·강정희. 2002. 『영유아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윤홍식. 2005. "가족정책의 성통합적 재구조화: 노동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4): 291-319.

- 장익진. 1998. 『사회과학 방법론 총서: 다차원 척도 분석법』. 서울: 연암사.
- 장지연·이정우·최은영·김지경. 2005.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 2004.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
- 하수정·이향미. 2005.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의 만남: 다시 보는 여성학. *Women's Oppression Today: The Marxist/Feminist Encounter*. 서울: 간디서원.
- 한국여성개발원. 2004. 『2004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 홍두승. 1988. “직업과 계급: 집락분석을 통한 계급분류”. 『한국사회학』, 22(4): 23-45.
- 홍승아. 2005. 『복지국가 모성정책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OECD 18개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Aust, A. and Bönker, F. 2004. "New social risks in a conservative welfare state: The case of Germany" pp. 29-53. in *New Risks, New Welfare*, edited by P. Taylor-Goob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rgqvist, C. and A. Jungar. 2000. "Adaptation or diffusion of Swedish gender model?." pp. 160-179. in *Gendered policies in Europe: Reconciling employment and family life*, edited by L. Hantrais. New York, NY: St. Martin's Press.
- Bergqvist, C. and A. Nyberg. 2002. "Welfare state restructuring and child care in Sweden." pp. 287-307. in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edited by S. Michael & R. Mahon. New York: Routledge.
- Borchorst, A. 2002. "Danish child care policy: Continuity rather than radical change." pp. 267-286. in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edited by S. Michael & R. Mahon. New York: Routledge.
- Bradshaw, J. and N. Finch. 2002. A comparison of child benefit packages in 22 countries.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Research Report No 174.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UK.
- Bruning, G., and J. Plantenga. 1999. "Parental leave and equal opportunities: Experiences in eight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9(3): 195-209.
- Bussemaker J., and K. Kersbergen. 1994. "Gender and Welfare States: Some Theoretical Reflections." pp. 8-25. in *Gendering Welfare States*, ed. by D. Sainsbur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astles, F. 2003.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friendly public policy in 21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 209-227.
- Daly, M. 2000. *The Gender Division of Welfare: the Impact of the British and German Welfare State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vander, A., T. Ferrarini, and S. Thalberg. 2004. "Swedish parental leave and gender equality: Achievements and reform challenges in a European perspective." Institute for Futures Studies; 2005: 11.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J: Princeton

-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2002. "A new gender contract." in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pp. 68-95. edited by G. Esping-Andersen, G. Duncan, A. Hemerijck and J. Myl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errarini, T. 2003. "Parental leave institutions in eighteen post war welfare states."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Doctoral Dissertation Series no. 58.
- Gregory, A. and Windebank, J. 2000. *Women's work in Britain and France: Practice, theory and policy*. Great Britain: Macmillan Press LTD.
- Haas, L. 1992. *Equal parenthood and social policy: A study of parental leave in Swede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iilamo, H. and Kangas, O. 2003. "Trap for women or freedom to choose?: Child home care allowance in Finnish and Swedish political rhetoric." Paper for the inaugural ESPAnet conference "Changing European Societies-The role for social policy" Organized by the Danish National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Copenhagen, 13-15 November 2003.
- Kremer, M. 2002. The illusion of free choice: Ideals of care and child care policy in the Flemish and Dutch welfare states. In S. Michel & R. Mahon,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pp. 113-142. New York: Routledge.
- Kreimer, M. 2004. "Austria: Parental Insurance and Childcare, Statements and Comments." Review Program of 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April 19-20, 2004. Stockholm, Sweden.
- Leria, A. 2002. *Working parents and the welfare state: Family change and policy reform in Scandinavia*.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wis, J. 1993. "Introduction: Women, work, family and social policies in Europe." in *Women and social policies in Europe: Work, family and the state*. edited by J. Lewis. VM: Edward Elgar.
- Luxemburg Income Study, 2003. "Family Policy Database, Version 2: Family Leave Policies."
<http://www.lisproject.org/publications/fampol/fampol03.htm>
- Mahon, R. 2002.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through the lens of child care." pp. 1-27. in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edited by S. Michel and R. Mahon. New York: Routledge.
- Maier, F. 2004. "Germany: Parental Insurance and Childcare, Statements and Comments." Review Program of 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April 19-20, 2004. Stockholm, Sweden.
- Morgan, K. and K. Zippel. 2003. "Paid to care: the Origins and effects of care leave policies in Western Europe." *Social Politics*, 10: 49-85.

- Moss, P., and F. Deven. 1999. "Parental leave in context". pp. 1-24. in *Parental leave: Progress or pitfall*. edited by P. Moss and F. Deven. Brussels: NIDI/CBGS Publications.
- Nyberg, A. 2004. "Parental leave, public childcare and the dual earner/dual carer-model in Sweden." Discussion Paper, Peer Review Program of 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April 19-20, 2004. Stockholm, Sweden.
- O'Connor, J., Orloff, A., and Shaver, S. 1999. *States, markets, families: Gender, liberalism and social policy in Australia, Canada,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 2002.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 1: Australia, Denmark and the Netherlands*. Paris, France: OECD.
- OECD. 2003a.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 2: Austria, Ireland and Japan*. Paris, France: OECD.
- OECD. 2003b. *Labou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Empirical evidence on the role of policy and other determinants in OECD countries*. Paris, France: OECD.
- OECD. 2004.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 3: New Zealand, Portugal and Switzerland*. Paris, France: OECD.
- OECD. 2005.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 4: Canada, Finland,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Paris, France: OECD.
- Orloff, A. 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7): 303-328.
- Pylkkänen, E. and A. Smith. 2004. "The impact of family-friendly policies in Denmark and Sweden on mothers' career interruptions due to childbirth." IZA Discussion Paper No. 1050.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 Selm, A. 2004. "The Netherlands: Parental Insurance and Childcare, Statements and Comments." Review Program of 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April 19-20, 2004. Stockholm, Sweden.
- Sleebos, J.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 Smith, A. 2001. "Parental leave: Supporting male parenting? A study using longitudinal data of policy variation across the European Union." Paper given at the EURESCO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Europe, Bad Herrenalb, Germany 23-28 June 2001.
- Sutela, H. 2004. "Finland" Peer Review: Parental Insurance and Childcare: Statements and Comments.
- Taylor-Gooby, P. 2004a. "New Social Risks and Welfare States: New Paradigm and New Politics?" pp.209-238. in *New Risks, New Welfare*, edited by P. Taylor-Goob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Gooby, P. 2004b. "New Risks and Social Change" pp. 1-28. in *New Risks, New*

Welfare, edited by P. Taylor-Goob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Taylor-Gooby, P. and Larsen, T. 2004. "The UK-A test case for the liberal welfare state?" pp. 55-82. in *New Risks, New Welfare*, edited by P. Taylor-Goob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Timonen, V. 2004. "New risks-Are they still new for the Nordic Welfare States?" pp. 83-110. in *New Risks, New Welfare*, edited by P. Taylor-Goob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The Level of Support in Parents' Childcare and Work in 21 OECD Countries: Parental Leave and Childcare

Yoon, Hong-Si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ssify and compare 21 OECD countries in regard to the level of support in parents' childcare and work. Several meaningful conclusions were suggested. First, examining the level of support in parents' childcare and work, 21 OECD countries can be classified into clusters different from the mainstream welfare state typology. Second, the level of parents' childcare and work support was high in socio-democratic countries such as Denmark, Finland, Norway and Sweden. Third, the level of parents' childcare right support is not necessarily positively related to that of parents' work in the labor market. As we have seen in the cases of France and Austria, although both countries have relatively high level of parents' childcare and work support, the level of work support in the labor market is low. These result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n family policy in that Korean society has to support both the parents' childcare right and the work right in the labor market.

Key words: (de)commodification, (de)familialization, the right of parents' child care and work, parental level, child care, family policy.

[접수일 2006. 5. 3. 게재확정일 2006. 8. 2]